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03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0.

발 의 자:이탄희·오영환·임오경

양향자 • 도종환 • 이성만

김두관・유기홍・고민정
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온라인·정보통신기기,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.

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적용되는 접촉,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 주가 구체적이지 않고, 이에 따른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한 것 때문 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,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의"를 "제4항까지의"로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"금지"를 "금지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① ~ ③ (생 략)	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
	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
	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
	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
	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	<u> </u>
1항부터 <u>제3항까지의</u> 규정에	<u>제4항까지의</u>
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	
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	
하여야 한다.	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	
와 가해학생의 선도・교육을	
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동	
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	
다)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	
청하여야 하며, 각 조치별 적용	
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	

- 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1. (생 략)
- 2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 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 복행위의 <u>금지</u>
- 3. ~ 9. (생 략)
- ② ~ ②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2
금지(정보통신망을 ㅇ
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
3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⑫ (현행과 같음)